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나3196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결 2018. 9. 20.

판결 선고 2018. 10. 23.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6004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2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행의 "사망하게"를"2016. 8. 27. 사망하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상금채권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갑 제5,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에 따라 F(상속인 포함, 이하 같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계산하면 367,803,915원이 된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① 성별, 생년월일, 직업(평균소득) : 남, G생, 조력공(1일 110,194원)

② 생계비 공제 : 1/3

③ 일실수입 계산 : 387,736,13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름)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6-8-17	2051-2-2	110,194	22	2,424,268	1/3	100.0%	239.9092	387,736,130

(2) 치료비 : 18,412,320원(원고 지급액)

(3) 장례비 : 5,000,000원

(4)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 287,803,915원[= 411,148,450원(= 일실수입387,736,130원 + 치료비 18,412,320원 +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제한 70%(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탑승 경위, F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고려하여 F의 과실을 30%로 본다)]

나) 위자료 : 80,000,000원(= F 60,000,000원 + F의 부모 각 10,000,000원, F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다) 손해액 합계 : 367,803,915원(= 재산상 손해 287,803,915원 + 위자료80,000,000원)

2) 손해배상액의 확정 및 소멸

가)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F의 상속인들이 2016. 10. 20. 원고차량 운전자인 D으로부터 30,000,000원의형사합의금을 수령한 바 있고, D과 F의 상속인들(상속인 대표 부 H) 사이의 형사합의 서(갑 제4호증의 11)에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양 당사자가 '위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F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 합의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점, ② 그 결과 F의 상속인들이 직접 원 ·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경우 원래의 손해배상금 또는 채권양수금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청구원인의 법적 구성만 달라질 뿐 F의 상속인들이 위 형사합의금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결과는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형사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형사합의금 상당의 손해에 관해서는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것으로 하되 상속인들이 이를 위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서만 청구하기로 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로 인한 F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와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

보험회사 등이 공동불법행위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손해배상채무액을 수령하면서 가해자 측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 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채무액에다 기존에 수령한 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 전부가 보험회사 등의 출재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40,000,000원을 F의 상속인들인 F의 부모에게 지급하면서 F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F의 상속인들이 위 금액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 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F의 상속인들이 피고 또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E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F과 그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채권은 위 1)항에서 본 손해액

367,803,915원 중 보험금 340,000,000원 및 기지급 치료비 중 F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치료비 상당을 제외한 금액인 12,888,624원(= 18,412,320원 × 70%)의 합계 352,888,624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출재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원 · 피고의 책임비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3행의 "반대방면세서"를 "반대방면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다.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잔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 운전자, 피고차량 운전자의 각과실비율은 90%:10%이고, 원고가 F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으로 합의금 340,000,000원 및 F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 12,888,624원의 합계 352,888,62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5,288,862원(= 352,888,624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재심의결정 취지에 따라 위 금액을 초과 하여 2016. 11. 30. 3,682,460원 및 2017. 1. 23. 68,000,000원 합계 71,682,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2017. 6. 28. 28,000,000원 및 2017. 7. 7. 7,841,220원 등 합계 35,841,220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으로 35,841,240원(= 71,682,460원 - 35,841,22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로써 전액소멸하여 잔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서경원, 판사 주진오